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 철 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5
----------	---------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전철규, 이충현, 한상욱,  
조기만, 신찬호, 박성호,  
강선영, 정재봉

## 1.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 법체계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 나.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성방법 변경 (안 제3조)
-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 라. 자문방법에서 심의·자문·요청 등으로 추가 (안 제7조)

- 마. 위원회의 회의 구체화 명시 (안 제8조)
- 바.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사항 추가 (안 제9조)
- 사.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변경 (안 제10조~제12조)
- 아.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사항 추가 (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 나. 협조부서 : 도로과

#### 다. 입법예고 : 2024. 2. 23. ~ 3. 4.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 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강서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 5급 이상 공무원

나.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  
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서기는 위원회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면직 경우

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제7조의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

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 주관부서에서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



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원안채택 :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 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서기는 회의시 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2020. 12. 8.>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0.1., 2

008.4.3., 2010.9.30., 2011.10.27., 2012.9.28., 2013.8.1., 2014.10.20., 2019.9.26.,  
2021.9.30., 2021.12.30., 2022.3.10.>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

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03.5.15., 2007.7.30., 2007.10.1., 2007.12.26., 2010.9.30., 2021.12.30.>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신설 2019.12.31., 2021.12.30.>

1.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